

[양식 제10호]

혼인신고서 (년 월 일)			※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, 선택항목에는 '영표(○)'로 표시하기 바랍니다.						
구 분		남 편(부)			아 내(처)				
① 혼인당사자 신고인	한글 성명	* <input type="text"/> / <input type="text"/>	② 또는 서명	* <input type="text"/> / <input type="text"/>	③ 또는 서명				
	한자	(<input type="text"/> / <input type="text"/>)		(<input type="text"/> / <input type="text"/>)					
	본(한자)		전화		본(한자)		전화		
	출생연월일								
	*주민등록번호	-				-			
	*등록기준지								
*주소									
② 부모 양부모	부 성명								
	주민등록번호	-				-			
	등록기준지								
	모 성명								
	주민등록번호	-				-			
	등록기준지								
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	년	월	일						
④ 성·본의 협의	자녀의 성·본을 모의 성·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?				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 <input type="checkbox"/>				
⑤ 근친혼 여부	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?				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 <input type="checkbox"/>				
⑥ 기타사항									
⑦ 중인	성 명	② 또는 서명				주민등록번호	-		
	주 소								
	성 명	② 또는 서명				주민등록번호	-		
	주 소								
⑧ 동의자	남편	부 성명	② 또는 서명				성 명	② 또는 서명	
		모 성명	② 또는 서명				주민등록번호	-	
	아내	부 성명	② 또는 서명				성 명	② 또는 서명	
		모 성명	② 또는 서명				주민등록번호	-	
	⑨ 신고인 출석여부	① 남편(부)				② 아내(처)			
	⑩ 제출인	성 명					주민등록번호	-	

*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눈표(*)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
* 아래 사항은 「통계법」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. 「통계법」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 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
인구동향조사		
②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		년 월 일부터 동거
④ 혼인종류	남편	①초혼 ②사별 후 재혼 ③이혼 후 재혼 아내 ①초혼 ②사별 후 재혼 ③이혼 후 재혼
⑤ 최종 졸업학교	남편 (부)	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(교) ⑥ 대학원 이상 아내 (처)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(교) ⑥ 대학원 이상
⑥ 직업	남편 (부)	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농림어업 ⑦ 기능직 ⑧ 장치·기계 조작 및 조립 ⑨ 단순노무직 ⑩ 군인 ⑪ 학생·가사·무직 아내 (처)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농림어업 ⑦ 기능직 ⑧ 장치·기계 조작 및 조립 ⑨ 단순노무직 ⑩ 군인 ⑪ 학생·가사·무직

작성방법

- * 등록기준지 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* 주민등록번호 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* ①, ②란 및 ⑤, 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, 나머지 란(③, ④, ⑥, ⑧)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.
- *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.
- ②란 :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③란 :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.
- ④란 : 「민법」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분을 모의 성·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.
- ⑤란 : 혼인당사자들이 「민법」 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[8촌이내의 혈족(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)]을 표시합니다.
- ⑥란 :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(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)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
 -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, 등록기준지
- ⑦란 :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.
- ⑧란 :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(2018. 6. 30.까지는 금치산자 포함)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.
- ⑩란 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- * 아래 사항은 「통계법」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.
- ⑨란 :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(동거)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.
- ⑪란 :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'영표(○)'로 표시합니다. <예시> 대학교 3학년 재학(중퇴) → ④ 고등학교에 '영표(○)'로 표시
- ⑫란 :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.

- ① 관리자 : 정부, 기업,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, 지휘 및 조정(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)
-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: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(과학, 의료, 복지, 교육, 종교, 법률, 금융, 예술, 스포츠 등)
- ③ 사무종사자 : 관리자,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추진(행정, 경영, 보험, 감사, 상담·안내·통계 등)
- ④ 서비스종사자 : 공공안전, 신변보호, 돌봄, 의료보조, 미용, 혼례 및 장례, 운송, 여가, 조리와 관련된 업무
- ⑤ 판매종사자 :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(인터넷, 상점, 공공장소 등), 상품의 광고·홍보, 계산·정산 등
- ⑥ 농림·어업·숙련 종사자 : 작물의 재배·수확, 동물의 번식·사육, 산림의 경작·개발, 수생·동·식물 번식 및 양식 등
-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: 광업, 제조업,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, 제품 가공
- ⑧ 장차·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: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·조립, 산업용 기계·장비조작, 운송장비의 운전 등
- ⑨ 단순노무 종사자 :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
- ⑩ 군인 : 의무복무를 포함하여,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(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)
- ⑪ 학생·가사·무직 :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, 전업주부이거나,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

첨부서류

- *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1.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.
 2. 혼인등의서[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(2018. 6. 30.까지는 금치산자 포함)이 혼인하는 경우, 단 신고서 등외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]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(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)
 3.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[조정,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(화해)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].
 4.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.
 5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
 -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: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(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)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각 1부
 -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: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1부
 6. 「민법」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·본을 모의 성·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(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) 1부.
 7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 -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
 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)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)
 -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(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)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*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*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(소제기자)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